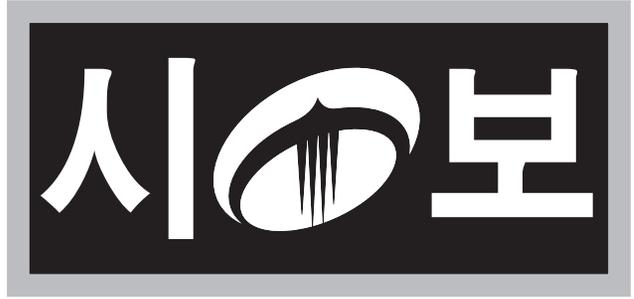


포 향 시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749호 2009. 10. 6(화)

선	기 관 의 장
람	

포 향 시

- 시장지시사항..... 2
- ◀ 입법예고 ▶
- 포항시 여성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제2009-1023호) 5
- 포항시 포항구룡포과메기산업특구 내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제2009-1029호) 9
- 포항시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제2009-1030호)11
- ◀ 고 시 ▶
- 보안림 지형도면 변경고시(제2009-87호) 12
- ◀ 공 고 ▶
- 주민의 조례제정 및 폐제 청구권자 총수 및 연서 주민수 공표(제 2009-1026호) 13

회								
람								

시장 지시사항

- 2009. 10. 5(월) 확대 간부회의 -

관 리 번 호	지 시 내 용	주관부서
<p>훈 시 (10. 5)</p>	<p>○ 당면업무 추진 노고치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석연휴 당직과 비상근무 등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해준 직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영일만항 개장식 행사에 대통령 방문시는 열렬한 환영으로 고향의 정을 듬뿍 느끼게 하였고 우리시 현안사업 설명에 대통령께서 관심과 긍정적 답변으로 일관하셔서 활발한 사업추진을 기대할 수 있게 됨. - 이 자리를 빌어 고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p>○ 금년사업 마무리 철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4분기를 맞이하여 금년사업에 한 건의 예산불용도 없도록 부서장들이 철저히 확인·점검하는 등 사업마무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p>○ 내년도 예산편성 철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년도 예산확보와 관련 부서별 타도시를 벤치마킹 하는 등 적극적인 시책개발을 통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p>○ 포항스틸러스 사랑운동 지속전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연전연승으로 매스컴을 타고있는 포항스틸러스에 대한 사랑은 곧 포항시 홍보라는 마인드를 가져야 함. - 포항스틸러스 선전이 자주 매스컴에 오르내리면서 도시파워를 키워주고 포항시가 엄청나게 홍보되는 것임을 알기바라며, 스틸러스 사랑을 지속 전개바람. <p>○ 친서민 정책 추진철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의 친서민 정책은 시민들이 바라던 정책임으로 대응을 잘하고 행정력을 모아야 할 것이며, - 서민경제 활성화와 저소득층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서민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훈훈한 포항을 만들기 바람. 	<p>전 부 서</p> <p>전 부 서 (기획예산과)</p> <p>전 부 서 (기획예산과)</p> <p>전 부 서 (체육지원과) (자치행정과)</p> <p>전 부 서 (주민생활지원과) (경제통상과)</p>

관 리 번 호	지 시 내 용	주관부서
<p>훈 시 (10. 5)</p>	<p>○ 부서간 업무협조 강화 및 유기적 연계체제 확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일하거나 비슷한 시책을 각 부서별 개별 추진으로 예산을 낭비하고 효과를 반감시키고 있음. - 부서별 유기적 연계를 통하여 상호보완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행정력을 집중하기 바람. <p>○ 모든 시책에 공직자가 솔선수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택시타기운동” 캠페인은 공직자가 먼저 지켜 시민들에게 모범이 되는 마음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며, - 특히, 간부들에게는 직원들을 계도·지도할 수 있는 솔선수범의 리더쉽 마인드가 요구되고 있으며, - 담당부서에서는 철저히 확인점검 하는 등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주시기 바람. <p>○ 용선대회에 전직원이 참여하여 단합하는 경기로 개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월 9일 개최하는 용선대회는 전직원이 참여하여 한마음으로 단합하는 경기가 되도록 해주기 바람. <p>○ 푸르고 깨끗한 도시가도로 정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 3년 동안 읍면동, 각 부서에서 많은 사업을 추진한 결과 포항시 분위기가 많이 바뀌고 있음. - 읍면동에서는 유희지, 인도에 잔디심기, 옹벽 담쟁이 식재, 담장 허물고 나무심기 등을 실시하여 도시를 푸르고 깨끗하게 가꾸는데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람. 	<p>전 부 서 (자치행정과) (농축산과) (기술보급과)</p> <p>전 부 서 (교통행정과) (자치행정과)</p> <p>전 부 서 (체육지원과) (자치행정과)</p> <p>전 부 서 (도시녹지과) (남, 북구청) (읍 면 동)</p>
<p>‘09-133</p> <p>‘09-072 (추가1)</p>	<p>○ 세외수입 징수철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외수입 징수는 재정관리과에서 적극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100% 징수를 추진하기 바람. - 각 부서에서도 관할 세외수입은 적극적으로 징수 해야 할 것이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100% 징수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주시기 바람. <p>○ 농촌 일손돕기 적극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확기인 논번기가 시작되고 농촌에서 일손이 몹시 바쁘게 돌아가고 있음. - 농촌 일손돕기에 관심을 가지고 공직자들도 현장에 참여 할 수 있도록 일손돕기를 적극 추진하기 바람. 	<p>재정관리과 (전 부 서)</p> <p>농축산과</p>

관 리 번 호	지 시 내 용	주관부서
'09-082 (추가3)	<p>○ 쌀 소비촉진 시책마련 지속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년도 풍년농사가 예상되고 있고 쌀 소비 시책이 요구 되고 있음. 장기적인 소비대책을 검토하기 바람, - 쌀 막걸리, 쌀 국수 등 쌀 소비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시책을 전 기관단체에 홍보하여 함께 추진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농축산과
09-134	<p>○ 농촌체험사업에 상옥 슬로우시티 적극 활용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죽장 상옥에 친환경 슬로우시티를 조성하여 도시민들이 체험토록 하고 있음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기 바람, - 농촌체험과 관련해서 부서간 유기적인 연계와 상호 협력을 통해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행정력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농축산과 (기술보급과)
09-135	<p>○ 건축문화상 선정시 친환경에너지 사용 적극 권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항시 건축문화상 대상건축물을 선정하며 공공과 사기업, 개인을 막론하고 친환경 에너지 사용을 적극 권장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하기 바람. 	건 축 과

부시장 지시사항

- 2009. 10. 5(월) 확대 간부회의 -

관 리 번 호	지 시 내 용	주관부서
훈 시 (9. 28)	<p>○ 시정관련 마인드 제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정과 관련한 공무원들의 마인드를 높여 많은 홍보 자료가 제출 될 수 있도록 하기바라며, - 적극적인 홍보자료 제출을 통하여 시민들에 대한 시정홍보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하기바람 <p>○ 선거법 준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소한 위법이라도 오해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각종 업무추진에 선거법 저촉여부를 반드시 확인바람. 	<p>전 부 서 (공보담당관)</p> <p>전 부 서 (자치행정과)</p>

관 리 번 호	지 시 내 용	주관부서
<p>훈 시 (9. 2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직기강확립 철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직비리에 대한 전국적인 사정활동이 전개되고 있는 바, - 간부직원들이 솔선하고 직원들의 공직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하여 적발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바람. ○ 결재(협조)라인 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당자가 업무 기안후 결재란에 담당(계장)의 협조를 득하여 업무 추진에 담당의 업무노하우가 반영되도록 협조라인을 준수하기 바람. ○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처벌받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기 바람.. 	<p>전 부 서 (감사담당관) (남, 북구청)</p> <p>전 부 서 (자치행정과)</p> <p>전 부 서 (감사담당관)</p>

입법예고

포항시 공고 제2009-1023호

포항시 여성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포 항 시 장 박 승 호

2009. 10. 1.

포항시 여성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운영자문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을 변경하여 운영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운영자문위원회의 기능 중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과 다문화가족지원에 관한 전반적 사항의 자문기능을 추가함(안 제12조)

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 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여성문화회관장 으로 함(안 제13조)

3.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4.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 10.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 여성문화회관장(주소 : 포항시 북구 우현동 4B1L, 전화 270-5542, FAX 270-5540, E-mail : sh2061002@korea.kr)에게 서면, 전화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PC통신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필요한 사항 등

5. 기 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www.ipohang.or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포항시 여성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포항시 여성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여성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기타” 를 “그 밖에” 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공휴일과 토요일의 오후 및 야간” 을 “공휴일과 야간” 으로 한다.

제6조 본문 중 “각호의 1에” 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기타” 를 “그 밖에” 로 한다.

제7조 본문 중 “각호의 1에” 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기타” 를 “그 밖에” 로 한다.

제8조 본문 중 “각호의 1에” 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로 한다.

제12조제4호 중 “기타” 를 “그 밖에” 로 하고 제4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 5. 다문화가족지원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제13조제1항 중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을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를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담당주사가” 를 “여성문화회관장이” 로 한다.

제16조 본문 중 “각호의 1의” 를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기타” 를 “그 밖에” 로 한다.

제19조 본문 중 “각호의 1에” 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p>제3조(사용자의 범위) (생 략) 1. (생 략) 2.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p>	<p>제3조(사용자의 범위)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그 밖에 -----</p>
<p>제5조(사용료등의 징수) ① (생 략) ② 공휴일과 토요일의 오후 및 야간의 사용료는 기본사용료의 20퍼센트를 가산한다 ③ (생 략)</p>	<p>제5조(사용료등의 징수) ① (현행과 같음) ② 공휴일과 야간----- ----- ③ (현행과 같음)</p>
<p>제6조(사용료등의 면제)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 사용료, 수강료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 3. (생 략)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p>	<p>제6조(사용료등의 면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p>
<p>제7조(사용제한 및 허가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에 대하여는 사용제한 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 2. (생 략) 3. 기타 사용제한 또는 허가취소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p>	<p>제7조(사용제한 및 허가취소 등)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 1. ~ 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 -----</p>
<p>제8조(사용료등의 반환) 납부된 사용료, 수강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 및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 4. (생 략)</p>	<p>제8조(사용료등의 반환) -----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1. ~ 4. (현행과 같음)</p>
<p>제12조(기능) (생 략) 1.~ 3. (생 략) (신 설) (신 설) 4. 기타 회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p>	<p>제12조(기능) (현행과 같음) 1.~ 3. (현행과 같음) 4. <u>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u> 5. <u>다문화가족지원에 관한 전반적 사항</u> 6. 그 밖에-----</p>
<p>제13조(구성) ① 위원회는 <u>위원장 1인을 포함</u>한 11인 이하로 구성한다.</p>	<p>제13조(구성) ① ----- <u>위원장 1명을 포함</u>한 11명 -----</p>

<p>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 3. (생략)</p> <p>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고, 간사는 <u>교육담당주사</u>가 된다.</p> <p>제1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 3. (생략) 4. <u>기타</u> 위원이 품위손상등으로 부 적당하다고 인정될 때</p> <p>제19조(교육강사 등의 해촉) 시장은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자가 다음 <u>각호의 1</u>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직을 해촉할 수 있다 1. ~ 3. (생략)</p>	<p>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 -----.</p> <p>1. ~ 3. (현행과 같음)</p> <p>③ ----- ----- <u>여성문화회관장</u>이 --.</p> <p>제16조(위원의 해촉) ----- 각호의 어느 하나의 ----- -----</p> <p>1. ~ 3. (현행과 같음) 4. <u>그 밖에</u> ----- -----</p> <p>제19조(교육강사 등의 해촉) ----- <u>각 호의 어느 하나에</u> ----- -----</p> <p>1. ~ 3. (현행과 같음)</p>
---	--

포항시 공고 제2009-1029호

포항시 포항 구룡포 과메기산업특구 내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입법예고합니다.

포 항 시 장 박 승 호

2009년 10월 5일

포항시 포항구룡포과메기산업특구 내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상북도 규제개혁법무담당관-159(2009.5.18)호에 의한 검토의견을 반영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등(제2조제1항제1호)

- 축산물의 처리는 「축산물 가공처리법」 제22조 농림수산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 받은 작업장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본 조례의 “농수축산물의 간이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라 규정함은 상위법령에 위배됨

3.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참조

4. 참고사항(관련법령) : 붙임참조

- 가. 「농지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 나.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 특별법」 제26조제4항
- 다. 「축산물 가공처리법」 제22조

포항시 포항 구룡포 과메기산업특구 내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포항 구룡포 과메기산업특구 내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농수축산물의 간이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를 “농수산물의 간이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로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등) ① (생 략) 1.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대상 시설이 아닌 간이 농수 축산업용 시설과 <u>농수축산물의</u> 간이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 (생 략) ② ~ ④ (생 략)	제2조(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등) ① (현행과 같음) 1. ----- ----- ----- <u>농수산물의</u> ----- ----- 2.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포항시 공고 제2009-1030호

「포항시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포항시장 박승호

2009년 10월 5일

포항시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포항시 농공단지 조성 목적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재정·회계 운영을 위하여 『포항시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를 폐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포항시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 폐지
(조례 제0066호, 1995. 01. 12)

3. 의견제출

이 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10월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참조 : 기업노동과장, 주소:포항시 남구 대잠동 시청앞길 100번지, 전화:054 -270-2463, 팩스:054-270-2430, E-mail:boramekhs@korea.kr)에게 서면, 전화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PC통신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연락처
- 다. 기타 필요한 사항

4. 기 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www.ipohang.or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포항시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

포항시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잔여금 및 채납액은 일반회계로 편성하여 운영한다.

고 시

포항시 고시 제2009 - 87 호

보안림 지형도면 변경고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해제된 보안림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포 항 시 장 박 승 호

2009년 10월 1일

1. 보안림 지형도면 작성취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의 투명화 및 국민의 토지이용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2. 보안림구역 지형도면 변경고시 조서

임야 소재지			지 적 (m ²)	보안림종류	보안림면적 (m ²)	비고
읍면	리	지번				
계		271필	17,996,934	5종	17,886,304	
오천	문충	산57	51,967	토석방비	51,967	
송라	화진	449-1외 2필	41,209	비사해안	41,209	
연일	달전	산76외 36필	4,074,091	1종수원	4,070,819	
구룡포	석병	산11외 122필	1,991,121	어 촌	1,946,373	
연일	유강	산51외 106필	11,838,546	경 관	11,775,936	

3. 보안림구역 지형도면 등 :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변경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함(문의처 포항시 도시녹지와 산림관리담당 054-270-3234)

공 고

포항시 공고 제 2009-1026호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권자 총수 및 연서 주민수 공표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제11조, 09.10.2시행)에 따라 조례의 제정과 개폐청구 및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1조(주민 총수의 공표)의 규정에 의거 2009년도 포항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권자 총수 및 연서주민수를 다음과 같이 재공표합니다.

- 다 음 -

단위 : 명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권자 총수(지방자치법 제15조)				연서하여야할 주민수
계	19세 이상의 주민 중 (공직선거법 제18조에 의한 선거권이 없는자 제외)			
	(1호) 주민등록자	(2호) 국내거소신고자	(3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	
390,714	390,477	199	38	3,908

2009년 10월 3일
포 항 시 장